|  |  |  |
| --- | --- | --- |
|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제155호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은 2013년 4월 23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실시함을 공포한다.  국장  2013년 11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소비자, 생산자와 판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 유기제품의 품질을 진일보 향상시키고, 유기제품 인증관리를 강화하여 생태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등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기제품인증 및 인증취득 유기제품의 생산, 가공, 수입 및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유기제품이란, 생산, 가공 및 판매가 중국유기제품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인류소비, 동물식용 제품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유기제품인증이란, 인증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기제품인증규칙에 따라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및 판매활동이 중국 유기제품국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는 전국 유기제품인증의 통일적인 관리, 감독 및 종합적인 조율작업을 책임진다.  지방 각급 질량기술감독부문과 각지 출입국검사검역기관 (이하 ‘지방인증감독부문’)은 업무분업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관할구 지역 내 유기제품인증활동의 감독검사 및 행정집법 작업을 책임진다.  **제5조** 국가는 통일적인 유기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통일된 인증목록, 통일된기준 및 인증실시규칙, 통일된 인증마크를 실시한다.  국가인감위는 유기제품인증목록, 인증실시규칙을 제정 및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제6조** 국가인감위는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유기제품인증 국제협력을 조직하여 전개한다. 유기제품인증 국제상호인증 활동 전개 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국제 협력 협의서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제2장 인증실시**  **제7조** 유기제품인증기구(이하 ‘인증기구’)는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거쳐, 법에 따라 법인자격을 취득한 후, 유기제품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인증기구에서 실시하는 인증활동 능력은 유관제품 인증기구 국가기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유기제품인증검사활동에 종사하는 검사원은 국가인증인원 등록기구에 등록한 후, 유기제품 인증검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8조** 유기제품 생산자, 가공자 (이하 ‘인증위탁인’로 총칭)는 자발적으로 인증기구에 위탁하여 유기제품 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유기제품인증실시규칙에서 규정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국가에서 규정한 유기제품 생산지 환경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유기제품 인증목록 이외의 제품에 대한 인증위탁인의 인증위탁을 수리할 수 없다.  **제9조** 인증기구는 인증위탁인의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위탁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인증위탁인에 대하여 현장검사 실시 5일전, 인증위탁인, 인증검사방안 등 기본정보를 국가인감위가 확정한 정보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인증기구는 인증위탁 수리 후, 인증기구는 유기제품인증실시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증검사원이 유기제품의 생산, 가공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법정자질을 갖춘 검사검측기구가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유기제품인증 실시규정에 따라, 원산지(기지)환경 감독(검사)가 필요한 경우, 법정 자질을 갖춘 감독(검사)기구가 감독(검사)보고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위탁인이 제공한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환경 감독(검사) 결과를 근거로 삼는다.  **제11조** 유기제품인증요구에 부합한 경우, 인증기구는 즉시 인증위탁인에게 유기제품인증증서를 발급하고, 중국유기제품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인증위탁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 및 인증인원은 인증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증기구는 인증과정의 완전성, 객관성,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인증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분류하여 보관해야 하며, 인증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품 검사검측 및 환경 감독(검사)기구는 검사검측, 검사결과의 진실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검사, 검측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분류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품 검사검측, 환경 감독기구 및 그 관련 인원은 검사, 검측보고의 내용과 결론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조에서 규정한 기록보관기한은 5년이다.  **제13조** 인증기구는 인증실시규칙 규정에 따라, 인증취득제품 및 그 생산, 가공과정에 대해 효과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결과가 인증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인증기구는 제때에 인증위탁인에게 유기제품 판매증을 발급함으로써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판매하는 유기제품 유형, 범위 및 수량과 인증증서상의 기록이 일치함을 보증해야 한다.  **제15조** 유기배합함량(중량 또는 액체부피를 의미하며, 물과 소금은 포함되지 않음. 이하 동일)이 95%이거나 그보다 높은 가공제품은 유기제품인증을 취득한 후 제품 또는 제품포장 및 상표마크에 ‘유기’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기제품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기구는 유기배합함량이 95% 보다 낮은 가공제품에 대해 유기인증을 진행할 수 없다.  **제3장 유기제품 수입**  **제17조** 중국에 유기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유기제품주관기구는 국가인감위에 유기제품인증시스템 등가성평가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감위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유관 전문가를 구성하여 신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문서점검, 현장검사 등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중국에 유기제품을 수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유기제품인증시스템과 중국 유기제품인증시스템이 등가 하다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감위는 그 주관부문과 관련 비망록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유기제품은 관련 비망록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국가인감위와 유기제품인증시스템 등가성 방면에 대해 비망록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제품이 유기제품으로써 중국에 수출 될 경우, 중국 유기제품관련 법률법규 및 중국 유기제품 국가기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중국 유기제품인증 획득이 필요한 수입제품의 생산업체, 판매업체, 수입업체 또는 대리상(이하 ‘유기제품인증위탁인’ 으로 총칭)은 국가인감위의 승인을 얻은 인증기구에 인증위탁을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수입유기제품인증위탁인은 유기제품인증 실시규정에 따라, 인증기구에 관련 신청자료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중, 신청서, 조사표, 가공공정흐름, 제품배합방법 및 생산, 가공과정중 사용한 투입품 등의 인증신청자료, 문서는 중문버전으로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구는 그 인증위탁을 수리할 수 없다.  인증기구가 수입유기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방법 및 유기제품인증 실시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인증검사기록 및 검사보고 등은 모두 중문버전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 수입유기제품의 입국검역 신고 시, 취득한 중국유기제품인증증서 사본, 유기제품 판매증 사본, 인증마크 및 제품표시 등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각 지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신고한 수입유기제품에 대하여 입국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인증증서 사본, 유기제품 판매증 사본, 인증마크 및 제품표시 등 문서를 검사하고, 물품증서가 서로 부합하는지 대조 확인해야 한다. 부합하지 않은 경우, 유기제품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  필요 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신고한 수입유기제품에 대하여 감독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의 품질이 중국 유기제품 국가기준 요구에 부합 하다는 것을 검증한다.  **제24조** 수입유기제품 인증위탁인이 유기제품인증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구는 국가인감위에 아래의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취득제품 유형, 범위 및 수량  (2) 수입유기제품인증위탁인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3) 인증취득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4) 인증증서 및 검사보고서 사본 (중문 및 외국어 버전)  (5) 국가인감위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4장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  **제25조** 국가인감위는 유기제품인증증서의 기본격식, 일련번호규정 및 인증마크 양식, 일련번호 규칙 제정을 책임진다.  **제26조**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27조** 인증증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증위탁인의 명칭, 주소  (2) 인증취득제품의 생산자, 가공자 및 생산지(기지)의 명칭, 주소  (3) 인증취득제품의 수량, 생산지(기지)면적 및 제품종류  (4) 인증유형  (5) 국가기준 또는 기술 규범 근거  (6) 인증기구명칭 및 그 책임자 서명, 발급일자, 유효기한  **제28조** 인증취득제품은 인증증서 유효기한 내에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인증위탁인은 15일 내에 인증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인증기구는 인증증서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증서에 대한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1) 인증위탁인 또는 유기제품 생산, 가공단위명칭 또는 법인성질이 변경된 경우  (2) 제품종류 및 수량이 감소한 경우  (3) 기타 인증증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제29조**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인증기구는 30일 이내에 인증증서를 무효시키고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1) 인증증서 유효기한이 만기되었으나 사용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인증취득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무효를 신청한 경우  (4) 기타 인증증서의 무효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제30조**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인증기구는 15일 이내에 인증증서를 잠정중지하며, 인증증서의 잠정중지기간은 1-3개월이며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인증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미 사용한 경우  (2) 인증취득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 활동 또는 관리시스템이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인증기구평가를 거쳐 잠정중지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거나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  (3) 기타 인증증서의 잠정중지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제31조**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인증기구는 7일 내에 인증증서를 취소시키고, 대외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1) 인증취득제품의 품질이 국가관련법규, 기준의 강제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기제품 국가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인증취득제품 생산, 가공활동 중 유기제품 국가기준 사용금지물질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오염을 초래한 경우  (3)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의 필요정보가 거짓, 허위보고인 경우  (4)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인증마크의 사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5) 인증취득제품의 생산지(기지) 환경품질이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6) 인증취득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 활동 또는 관리시스템이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인증증서 잠정중지기한에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인증취득제품이 인증증서에 명시한 생산, 가공장소 이외에 장소에서 재 가공, 분장, 분할되는 경우  (8)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관련측에 중대하게 호소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9)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유기제품인증활동에 종사하여 국가농산품, 식품안전관리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10)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인증감독부문 또는 인증기구가 그 제품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11) 기타 인증증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제32조** 유기제품인증마크는 중국 유기제품의 인증마크이다. 중국 유기제품인증마크에는 중국어로 ‘중국유기제품’ 및 영문 ‘ORGANIC’ 표시가 되어 있으며 도안은 다음과 같다.  **제33조** 중국유기제품인증마크는 인증증서가 제한한 제품유형, 범위 및 수량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국가인감위에서 통일한 일련번호 규칙에 따라, 인증마크에 고유번호(이하 ‘유기번호’)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위조방지, 추적기술을 적용하여 발급한 인증마크로 그 대응하는 인증증서와 인증취득제품 및 그 생산 가공단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4조**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은 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제품의 최소판매포장위에 중국유기제품인증마크, 유기번호 및 인증기구 명칭을 부착해야 한다. 인증취득제품 상표, 설명서 및 광고 등의 자료 위에 중국유기제품인증마크를 인쇄할 수 있으며, 비율에 따라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는 있으나, 변형, 변색되서는 안 된다.  **제35조** 아래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제품, 제품최소판매포장 및 그 상표상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대중이 해당제품이 유기제품의 문자 및 도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표시는 사용할 수 없다.  (1) 유기제품인증을 미 취득한 경우  (2) 인증취득제품이 인증증서상에 기재한 생산, 가공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재 가공, 분장, 분할한 경우  **제36조** 인증증서의 잠정중지 기한에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은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인증증서가 무효, 취소된 후, 인증위탁인은 인증기구에 인증증서 및 미사용 인증마크를 반환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7조** 국가인감위는 유기제품인증활동에 대해 감독검사 및 부정기적인 특별 감독검사를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제38조** 지방인증감독부문은 각각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소재지 관할구역의 유기제품인증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취득유기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각 지역의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외자인증기구, 수입유기제품인증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출유기제품의 인증, 생산, 가공, 판매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지방 각급 질량기술감독부문은 중자(中资)인증기구의 경내생산가공과 경내에 판매하는 유기제품인증, 생산, 가공 판매활동에 대한 감독검사 진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39조**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제품인증활동이 본 방법 및 유기제품인증 실시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2) 인증취득제품에 대한 감독조사  (3) 인증취득제품의 인증, 생산, 가공, 수입, 판매단위에 대한 감독검사  (4) 유기제품인증증서, 증서마크에 대한 감독검사 진행  (5) 유기제품인증자문활동이 관련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  (6) 유기제품인증 및 인증자문활동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7) 위법행위를 법에 의거하여 처리  **제40조** 국가인감위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유기제품인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인증기구는 인증증서를 발급하기 전, 요구에 따라 제때에 정보시스템으로 유기제품인증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인증증서 일련번호를 취득한다.  인증기구는 인증마크를 발급하기 전, 인증마크, 유기번호의 관련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지방인증감독부문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구가 제출하고 업로드한 인증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소재지 관할구역내에 전개하는 유기제품인증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41조**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 및 유기제품판매단위와 개인은 제품생산, 가공, 포장, 저장, 운송과 판매 등 과정에서 완벽한 제품 품질안전 추적시스템과 생산, 가공, 판매기록 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42조** 유기제품판매단위와 개인의 유기제품 구매, 저장, 운송, 판매 활동은 유기제품 국가기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판매하는 유기제품유형, 범위 및 수량과 판매증서상의 판매유형, 범위, 수량이 일치해야 하며, 원본내용과 일치하는 인증증서와 유기제품판매증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관련행정감독부문 또는 소비자 조회에 대비한다.  **제43조** 인증감독부문은 국가유관부문이 발표한 동식물전염병, 환경오염경보등 정보 및 감독검사, 소비자 신고, 미디어반영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제때에 유기제품인증구역, 인증취득제품 및 그 인증위탁인, 인증기구의 인증위험경보정보를 발표하고 관련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4조**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허위정보 제공, 금지물질 불법사용, 유기제품인증마크의 사용범위 초과 또는 제품품질안전의 중대사고를 초래한 경우, 인증기구는 5년 내에 해당 기업 및 그 생산기지, 가공장소의 유기제품인증위탁을 수리할 수 없다.  **제45조** 인증위탁인은 인증기구의 인증결과 또는 처리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인증기구에 제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처리결과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할 경우, 국가인감위에 제소할 수 있다.  **제46조** 어떠한 단위 및 개인은 유기제품인증활동 과정 중 위법행위를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인증감독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인감위, 지방인증감독부문은 제때에 조사처리하고,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6장 벌 칙**  **제47조** 위조, 도용, 불법 거래인증마크,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은《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기타 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8조** 인증증서를 위조, 변조, 도용, 불법거래, 양도, 임의 변경한 경우, 지방 인증감독관리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 40조 제 2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기구는 그 발급한 인증증서상의 일련번호를 자체적으로 편집한 경우, 인증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9조** 본 방법 제 8조 제 2관의 규정에 위반되고, 인증기구가 국가규정의 유기제품생산지 환경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유기제품인증목록 이외의 제품에 대해 인증위탁인에 인증증서를 발급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제50조** 본 방법 제 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품 또는 제품포장 및 상표상에 ‘유기’,’ ORGANIC’ 등의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대중이 해당제품이 유기제품 문자 및 도안이라고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인증감독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인증기구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국가인감위는 시정명령 및 경고를 내리고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1) 본 방법 제 40조 제 2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유기제품인증마크, 유기번호를 국가인감위가 확정한 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한 경우  (2) 본 방법 제9조 제 2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국가인감위에서 확정한 정보시스템에 관련 인증정보를 제출하거나 그 제출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3) 본 방법 제 24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국가인감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등록한 경우  **제52조** 본 방법 제 14조 규정을 위반하고, 인증기구가 발급한 유기제품 판매증 수량이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생산, 가공한 유기제품의 실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본 방법 제 1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증기구는 유기배합함량이 95%이하인 가공제품에 대해 유기인증을 진행하며, 지방인증감독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인증기구가 본 방법 제 30조, 제 31조 규정을 위반하고, 제때에 인증증서를 잠정중지 또는 취소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제 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5조** 인증위탁인이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포함될 경우,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유기제품인증을 미취득한 가공제품이 본 방법 제 15조 규정을 위반하고 유기제품 인증마크 표시를 부착한 경우  (2) 본 방법 제 33조 제 1관,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증서의 잠정중지기한 또는 무효, 취소 후 여전히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  **제56조** 인증기구, 인증취득제품의 인증위탁인이 국가인감위 또는 지방인증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7조** 수입유기제품의 입국검역 시, 사실대로 수입유기제품의 진실된 상황을 제공하지 않고,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관련 인증서를 취득하였거나 법정(法定)검사 유기제품에 대해 검역신고를 하지 않고, 검사를 피한경우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58조** 유기제품인증활동 중 기타 위법행위는 유관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 칙**  **제59조** 유기제품인증비용은 국가유관 가격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60조** 유기제품수출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1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유기배합이란, 유기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 시 사용하고 제품에 포함시킨 물질(변형 형식의 존재물질 포함)을 말하며 첨가제가 포함된다.  **제62조** 본 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63조** 본 방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2004년 11월 5일 공포한《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국가질검총국령제67호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  | **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155号  《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已经2013年4月23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4月1日起施行。  局 长  2013年11月15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维护消费者、生产者和销售者合法权益，进一步提高有机产品质量，加强有机产品认证管理，促进生态环境保护和可持续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有机产品认证以及获证有机产品生产、加工、进口和销售活动，应当遵守本办法。  **第三条** 本办法所称有机产品，是指生产、加工和销售符合中国有机产品国家标准的供人类消费、动物食用的产品。  本办法所称有机产品认证，是指认证机构依照本办法的规定，按照有机产品认证规则，对相关产品的生产、加工和销售活动符合中国有机产品国家标准进行的合格评定活动。  **第四条** 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国家认监委）负责全国有机产品认证的统一管理、监督和综合协调工作。  地方各级质量技术监督部门和各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统称地方认证监管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负责所辖区域内有机产品认证活动的监督检查和行政执法工作。  **第五条** 国家推行统一的有机产品认证制度，实行统一的认证目录、统一的标准和认证实施规则、统一的认证标志。  国家认监委负责制定和调整有机产品认证目录、认证实施规则，并对外公布。  **第六条** 国家认监委按照平等互利的原则组织开展有机产品认证国际合作。  开展有机产品认证国际互认活动，应当在国家对外签署的国际合作协议内进行。  **第二章 认证实施**  **第七条** 有机产品认证机构（以下简称认证机构）应当经国家认监委批准，并依法取得法人资格后，方可从事有机产品认证活动。  认证机构实施认证活动的能力应当符合有关产品认证机构国家标准的要求。从事有机产品认证检查活动的检查员，应当经国家认证人员注册机构注册后，方可从事有机产品认证检查活动。  **第八条** 有机产品生产者、加工者（以下统称认证委托人），可以自愿委托认证机构进行有机产品认证，并提交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中规定的申请材料。  认证机构不得受理不符合国家规定的有机产品生产产地环境要求，以及有机产品认证目录外产品的认证委托人的认证委托。  **第九条** 认证机构应当自收到认证委托人申请材料之日起10日内，完成材料审核，并作出是否受理的决定。对于不予受理的，应当书面通知认证委托人，并说明理由。  认证机构应当在对认证委托人实施现场检查前5日内，将认证委托人、认证检查方案等基本信息报送至国家认监委确定的信息系统。  **第十条** 认证机构受理认证委托后，认证机构应当按照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的规定，由认证检查员对有机产品生产、加工场所进行现场检查，并应当委托具有法定资质的检验检测机构对申请认证的产品进行检验检测。  按照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的规定，需要进行产地（基地）环境监（检）测的，由具有法定资质的监（检）测机构出具监（检）测报告，或者采信认证委托人提供的其他合法有效的环境监（检）测结论。  **第十一条** 符合有机产品认证要求的，认证机构应当及时向认证委托人出具有机产品认证证书，允许其使用中国有机产品认证标志；对不符合认证要求的，应当书面通知认证委托人，并说明理由。认证机构及认证人员应当对其作出的认证结论负责。  **第十二条** 认证机构应当保证认证过程的完整、客观、真实，并对认证过程作出完整记录，归档留存，保证认证过程和结果具有可追溯性。  产品检验检测和环境监（检）测机构应当确保检验检测、监测结论的真实、准确，并对检验检测、监测过程做出完整记录，归档留存。产品检验检测、环境监测机构及其相关人员应当对其作出的检验检测、监测报告的内容和结论负责。本条规定的记录保存期为5年。  **第十三条** 认证机构应当按照认证实施规则的规定，对获证产品及其生产、加工过程实施有效跟踪检查，以保证认证结论能够持续符合认证要求。  **第十四条** 认证机构应当及时向认证委托人出具有机产品销售证，以保证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所销售的有机产品类别、范围和数量与认证证书中的记载一致。  **第十五条** 有机配料含量（指重量或者液体体积，不包括水和盐，下同）等于或者高于95％的加工产品，应当在获得有机产品认证后，方可在产品或者产品包装及标签上标注“有机”字样，加施有机产品认证标志。  **第十六条** 认证机构不得对有机配料含量低于95％的加工产品进行有机认证。  **第三章 有机产品进口**  **第十七条** 向中国出口有机产品的国家或者地区的有机产品主管机构，可以向国家认监委提出有机产品认证体系等效性评估申请，国家认监委受理其申请，并组织有关专家对提交的申请进行评估。评估可以采取文件审查、现场检查等方式进行。  **第十八条** 向中国出口有机产品的国家或者地区的有机产品认证体系与中国有机产品认证体系等效的，国家认监委可以与其主管部门签署相关备忘录。该国家或者地区出口至中国的有机产品，依照相关备忘录的规定实施管理。  **第十九条** 未与国家认监委就有机产品认证体系等效性方面签署相关备忘录的国家或者地区的进口产品，拟作为有机产品向中国出口时，应当符合中国有机产品相关法律法规和中国有机产品国家标准的要求。  **第二十条** 需要获得中国有机产品认证的进口产品生产商、销售商、进口商或者代理商（以下统称进口有机产品认证委托人），应当向经国家认监委批准的认证机构提出认证委托。  **第二十一条** 进口有机产品认证委托人应当按照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的规定，向认证机构提交相关申请资料和文件，其中申请书、调查表、加工工艺流程、产品配方和生产、加工过程中使用的投入品等认证申请材料、文件，应当同时提交中文版本。申请材料不符合要求的，认证机构应当不予受理其认证委托。  认证机构从事进口有机产品认证活动应当符合本办法和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的规定，认证检查记录和检查报告等应当有中文版本。  **第二十二条** 进口有机产品申报入境检验检疫时，应当提交其所获中国有机产品认证证书复印件、有机产品销售证复印件、认证标志和产品标识等文件。  **第二十三条** 各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对申报的进口有机产品实施入境验证，查验认证证书复印件、有机产品销售证复印件、认证标志和产品标识等文件，核对货证是否相符。不相符的，不得作为有机产品入境。  必要时，出入境检验检疫机构可以对申报的进口有机产品实施监督抽样检验，验证其产品质量是否符合中国有机产品国家标准的要求。  **第二十四条** 自对进口有机产品认证委托人出具有机产品认证证书起30日内，认证机构应当向国家认监委提交以下书面材料：  （一）获证产品类别、范围和数量；  （二）进口有机产品认证委托人的名称、地址和联系方式；  （三）获证产品生产商、进口商的名称、地址和联系方式；  （四）认证证书和检查报告复印件（中外文版本）；  （五）国家认监委规定的其他材料。  **第四章　认证证书和认证标志**  **第二十五条** 国家认监委负责制定有机产品认证证书的基本格式、编号规则和认证标志的式样、编号规则。  **第二十六条** 认证证书有效期为1年。  **第二十七条** 认证证书应当包括以下内容：  （一）认证委托人的名称、地址；  （二）获证产品的生产者、加工者以及产地（基地）的名称、地址；  （三）获证产品的数量、产地（基地）面积和产品种类；  （四）认证类别；  （五）依据的国家标准或者技术规范；  （六）认证机构名称及其负责人签字、发证日期、有效期。  **第二十八条** 获证产品在认证证书有效期内，有下列情形之一的，认证委托人应当在15日内向认证机构申请变更。认证机构应当自收到认证证书变更申请之日起30日内，对认证证书进行变更：  （一）认证委托人或者有机产品生产、加工单位名称或者法人性质发生变更的；  （二）产品种类和数量减少的；  （三）其他需要变更认证证书的情形。  **第二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认证机构应当在30日内注销认证证书，并对外公布：  （一）认证证书有效期届满，未申请延续使用的；  （二）获证产品不再生产的；  （三）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申请注销的；  （四）其他需要注销认证证书的情形。  **第三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认证机构应当在15日内暂停认证证书，认证证书暂停期为1至3个月，并对外公布：  （一）未按照规定使用认证证书或者认证标志的；  （二）获证产品的生产、加工、销售等活动或者管理体系不符合认证要求，且经认证机构评估在暂停期限内能够能采取有效纠正或者纠正措施的；  （三）其他需要暂停认证证书的情形。  **第三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认证机构应当在7日内撤销认证证书，并对外公布：  （一）获证产品质量不符合国家相关法规、标准强制要求或者被检出有机产品国家标准禁用物质的；  （二）获证产品生产、加工活动中使用了有机产品国家标准禁用物质或者受到禁用物质污染的；  （三）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虚报、瞒报获证所需信息的；  （四）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超范围使用认证标志的；  （五）获证产品的产地（基地）环境质量不符合认证要求的；  （六）获证产品的生产、加工、销售等活动或者管理体系不符合认证要求，且在认证证书暂停期间，未采取有效纠正或者纠正措施的；  （七）获证产品在认证证书标明的生产、加工场所外进行了再次加工、分装、分割的；  （八）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对相关方重大投诉且确有问题未能采取有效处理措施的；  （九）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从事有机产品认证活动因违反国家农产品、食品安全管理相关法律法规，受到相关行政处罚的；  （十）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拒不接受认证监管部门或者认证机构对其实施监督的；  （十一）其他需要撤销认证证书的情形。  **第三十二条** 有机产品认证标志为中国有机产品认证标志。中国有机产品认证标志标有中文“中国有机产品”字样和英文“ORGANIC”字样。图案如下：  **第三十三条** 中国有机产品认证标志应当在认证证书限定的产品类别、范围和数量内使用。认证机构应当按照国家认监委统一的编号规则，对每枚认证标志进行唯一编号（以下简称有机码），并采取有效防伪、追溯技术，确保发放的每枚认证标志能够溯源到其对应的认证证书和获证产品及其生产、加工单位。  **第三十四条** 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应当在获证产品或者产品的最小销售包装上，加施中国有机产品认证标志、有机码和认证机构名称。获证产品标签、说明书及广告宣传等材料上可以印制中国有机产品认证标志，并可以按照比例放大或者缩小，但不得变形、变色。  **第三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产品、产品最小销售包装及其标签上标注含有“有机”、“ORGANIC”等字样且可能误导公众认为该产品为有机产品的文字表述和图案：  （一）未获得有机产品认证的；  （二）获证产品在认证证书标明的生产、加工场所外进行了再次加工、分装、分割的。  **第三十六条** 认证证书暂停期间，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应当暂停使用认证证书和认证标志；认证证书注销、撤销后，认证委托人应当向认证机构交回认证证书和未使用的认证标志。  **第五章 监督管理**  **第三十七条** 国家认监委对有机产品认证活动组织实施监督检查和不定期的专项监督检查。  **第三十八条** 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依法对所辖区域的有机产品认证活动进行监督检查，查处获证有机产品生产、加工、销售活动中的违法行为。  各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负责对外资认证机构、进口有机产品认证和销售，以及出口有机产品认证、生产、加工、销售活动进行监督检查。  地方各级质量技术监督部门负责对中资认证机构、在境内生产加工且在境内销售的有机产品认证、生产、加工、销售活动进行监督检查。  **第三十九条** 地方认证监管部门的监督检查的方式包括：  （一）对有机产品认证活动是否符合本办法和有机产品认证实施规则规定的监督检查；  （二）对获证产品的监督抽查；  （三）对获证产品认证、生产、加工、进口、销售单位的监督检查；  （四）对有机产品认证证书、认证标志的监督检查；  （五）对有机产品认证咨询活动是否符合相关规定的监督检查；  （六）对有机产品认证和认证咨询活动举报的调查处理；  （七）对违法行为的依法查处。  **第四十条** 国家认监委通过信息系统，定期公布有机产品认证动态信息。认证机构在出具认证证书之前，应当按要求及时向信息系统报送有机产品认证相关信息，并获取认证证书编号。  认证机构在发放认证标志之前，应当将认证标志、有机码的相关信息上传到信息系统。地方认证监管部门通过信息系统，根据认证机构报送和上传的认证相关信息，对所辖区域内开展的有机产品认证活动进行监督检查。  **第四十一条** 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以及有机产品销售单位和个人，在产品生产、加工、包装、贮藏、运输和销售等过程中，应当建立完善的产品质量安全追溯体系和生产、加工、销售记录档案制度。  **第四十二条** 有机产品销售单位和个人在采购、贮藏、运输、销售有机产品的活动中，应当符合有机产品国家标准的规定，保证销售的有机产品类别、范围和数量与销售证中的产品类别、范围和数量一致，并能够提供与正本内容一致的认证证书和有机产品销售证的复印件，以备相关行政监管部门或者消费者查询。  **第四十三条** 认证监管部门可以根据国家有关部门发布的动植物疫情、环境污染风险预警等信息，以及监督检查、消费者投诉举报、媒体反映等情况，及时发布关于有机产品认证区域、获证产品及其认证委托人、认证机构的认证风险预警信息，并采取相关应对措施。  **第四十四条** 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提供虚假信息、违规使用禁用物质、超范围使用有机认证标志，或者出现产品质量安全重大事故的，认证机构5年内不得受理该企业及其生产基地、加工场所的有机产品认证委托。  **第四十五条** 认证委托人对认证机构的认证结论或者处理决定有异议的，可以向认证机构提出申诉，对认证机构的处理结论仍有异议的，可以向国家认监委申诉。  **第四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对有机产品认证活动中的违法行为，可以向国家认监委或者地方认证监管部门举报。国家认监委、地方认证监管部门应当及时调查处理，并为举报人保密。  **第六章 罚 则**  **第四十七条** 伪造、冒用、非法买卖认证标志的，地方认证监管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及其实施条例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第四十八条** 伪造、变造、冒用、非法买卖、转让、涂改认证证书的，地方认证监管部门责令改正，处3万元罚款。  违反本办法第四十条第二款的规定，认证机构在其出具的认证证书上自行编制认证证书编号的，视为伪造认证证书。  **第四十九条** 违反本办法第八条第二款的规定，认证机构向不符合国家规定的有机产品生产产地环境要求区域或者有机产品认证目录外产品的认证委托人出具认证证书的，责令改正，处３万元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五十条** 违反本办法第三十五条的规定，在产品或者产品包装及标签上标注含有“有机”、“ORGANIC”等字样且可能误导公众认为该产品为有机产品的文字表述和图案的，地方认证监管部门责令改正，处3万元以下罚款。  **第五十一条** 认证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国家认监委应当责令改正，予以警告，并对外公布：  （一）未依照本办法第四十条第二款的规定，将有机产品认证标志、有机码上传到国家认监委确定的信息系统的；  （二）未依照本办法第九条第二款的规定，向国家认监委确定的信息系统报送相关认证信息或者其所报送信息失实的；  （三）未依照本办法第二十四条的规定，向国家认监委提交相关材料备案的。  **第五十二条** 违反本办法第十四条的规定，认证机构发放的有机产品销售证数量，超过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所生产、加工的有机产品实际数量的，责令改正，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第五十三条** 违反本办法第十六条的规定，认证机构对有机配料含量低于95％的加工产品进行有机认证的，地方认证监管部门责令改正，处3万元以下罚款。  **第五十四条** 认证机构违反本办法第三十条、第三十一条的规定，未及时暂停或者撤销认证证书并对外公布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第六十条的规定处罚。  **第五十五条** 认证委托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地方认证监管部门责令改正，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一）未获得有机产品认证的加工产品，违反本办法第十五条的规定，进行有机产品认证标识标注的；  （二）未依照本办法第三十三条第一款、第三十四条的规定使用认证标志的；  （三）在认证证书暂停期间或者被注销、撤销后，仍继续使用认证证书和认证标志的。  **第五十六条** 认证机构、获证产品的认证委托人拒绝接受国家认监委或者地方认证监管部门监督检查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3万元以下罚款。  **第五十七条** 进口有机产品入境检验检疫时，不如实提供进口有机产品的真实情况，取得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有关证单，或者对法定检验的有机产品不予报检，逃避检验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检检验法实施条例》第四十六条的规定处罚。  **第五十八条** 有机产品认证活动中的其他违法行为，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的规定处罚。  **第七章　附 则**  **第五十九条** 有机产品认证收费应当依照国家有关价格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六十条** 出口的有机产品，应当符合进口国家或者地区的要求。  **第六十一条** 本办法所称有机配料，是指在制造或者加工有机产品时使用并存在（包括改性的形式存在）于产品中的任何物质，包括添加剂。  **第六十二条** 本办法由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负责解释。  **第六十三条** 本办法自2014年4月1日起施行。国家质检总局2004年11月5日公布的《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国家质检总局第67号令）同时废止。 |